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87
----------	-------

발의연월일 : 2023. 1. 10.

발의자 : 임종성 · 김경만 · 김정호  
김병기 · 장철민 · 이상현  
황운하 · 임호선 · 이수진(비)  
김승남 · 홍성국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  
제친선을 증진하고 국가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관광문  
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5년 제정된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관광의 경제적 편익 중심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관  
광지 환경보호, 관광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충분  
하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부가 관광자원의 환경친화적 개발 · 이용과 고용창출, 지역경  
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영향을 충분하게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의2, 제3조제2항, 제9조  
등).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관광의 발전을”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광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6의2. 관광산업 인력의 양성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속가능한 관광) 정부는 관광자원의 환경친화적 개발·이용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충분하게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u>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u>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1조(목적) -----</p> <p>-----</p> <p>-----</p> <p>----- <u>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관광의 발전을</u> -----</p> <p>-----.</p>
<p>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생략)</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2. ~ 6.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7. ~ 9. (생략)</p> <p>③ · ④ (생략)</p>	<p><u>관광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u></p> <p>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현행과 같음)</p> <p><u>1의2.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u></p> <p>2. ~ 6. (현행과 같음)</p> <p><u>6의2. 관광산업 인력의 양성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u></p> <p>7. ~ 9.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등) 정부	제9조(지속가능한 관광) 정부는

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광자원의 환경친화적 개발 · 이용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영향을 충분하게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